



# 보도자료



- \* 엠바고 : 2016년 4.6(수) 11시(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종료) 이후 사용
- \* 공동배포: 국조실, 지재위, 법무부, 산업부, 공정위, 중기청, 특허청, 경찰청
- \* 사전브리핑 : 4.5(화) 14시, 정부세종청사,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

법무부 상사법무과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경찰청 외사수사과

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윤현주(044-200-2221), 박순홍 사무관(2223)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과장 신용식(02-2110-2187), 김준일 사무관(2188) 과장 이진수(02-2110-3167), 조재철 검 사(3631)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이재근(044-203-5690), 홍경태 사무관(4533)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박제현(044-200-4596), 곽고은 사무관(4601) 과장 정기환(042-481-4399), 류선미 사무관(4459) 과장 전현진(042-481-5912), 박양길 서기관(5761) 과장 최호열(02-3150-2078), 김승영 경 감(0389)

#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

-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-

- 최대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,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
-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'처리기한 법정화' 추진
- 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
-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
- □ 정부는 4. 6(수),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「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\*(이하 지재위)」를 열어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」등 5개 안건을 심의·확정하였다.
  - \*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「지식재산기본법」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, 민간위원 20명 (총 33명)으로 구성(위원장 : 국무총리·민간 공동)

- 이번 종합대책은 「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 중소 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,
-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」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·제도 및 정책을 **원점에서 재검토**하였고,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**중소기업**의 **의견을 수렴**하였다.
-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,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.
- □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,
  -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**형사적 제재**가 매우 **낮은 수준**이었으며,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**장기화**에 따른 중소기업의 **해결노력 좌절**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,
  -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**무임승차 심리**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 기업 임직원의 **인식 및 관심부족**도 문제로 제기되었다.
  - 이처럼 정부는 국·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,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.
    - \*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: ('10) 45.7점 → ('12) 34.9점 → ('14) 45.6점으로 여전히 '취약'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(100점 만점, '15. 중기청)

- □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.
- □ 황교안 총리는 "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,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 되어야 함"을 강조하고,
  - "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, 유출 **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**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, '신고·상담'에서부터 '수사·기소·재판'에 이르기까지 **모든 관계 부처**가 **유기적인 협조 체계**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.

핵심전략 1.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.

- □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·탈취에 대한 **처벌**을 **강화**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  -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'징벌적 손해배상 제도'를 도입하여,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,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.
  -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,

-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 비밀을 보유·유출하거나, 삭제·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.
- 또한,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, 일정한 경우에는
  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, 이에 불응할 경우
  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.
-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,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**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**하기로 하였다.

핵심전략 2.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- □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**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** 법원에 집중하고,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'집중심리제'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.
  - 그간,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,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,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,
  -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'처리기한 법정화'를 추진하여,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□ 한편,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, 중소기업은 시간·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,
  - 시간·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,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핵심전략 3.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.

- □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, 얼마나 **신속**하게 관련 **증거를 확보**하고, **수사**· **기소가**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.
  - 이를 위하여, 현재 운영중인 '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'가 피해 '신고'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,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 신고·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,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.
- □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'17년 상반기까지 **17개 全지방 경찰청**에 '산업기술유출**전담수사팀**'을 구성, 전문 수사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
  - **검찰**에는 변리사 등 **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**로 채용하는 등,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.
- □ 한편,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,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,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·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.
- □ Start-up기업이나,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,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.

#### 핵심전략 4.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□ 국가 안보·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,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·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.
  - 현재 유통·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 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**인센티브**를 부여 하고 **해외 M&A 신고 대상기술 확대**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.
- □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·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, 교역량, 분쟁빈도 등을 고려 하여 IP-DESK(해외지식재산센터)\*를 확대,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.
  - \* (현재) 중국(5개)·미국(2개)·일본·태국·베트남·독일 등 6개국 11개 설치
- □ **황 총리**는 "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**창조** 경제의 핵심이자,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"이라고 강조하면서,
  - "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**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**"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.

- □ 이어서, 「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」,「2016년 지식 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」을 보고받고, 「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「재워배분방향 개선 방안」을 심의・확정하였다.
  - 「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2017~2021) 수립지침」은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'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,
    - 주요국의 IP 정책동향,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\*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(안)을 제시하였다.
    - \* 지식재산 비전 2021 : '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'를 목표로 「지식재산 富國,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」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
    -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.
  - 올해가 「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2012~2016)」의 마지막 해로, 「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.
  - 「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」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·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
  - 또한, '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'에 '중점투자방향'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「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 방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    - \* 개편방안 : △ '재원배분방향'을 6월 이전에 조기 수립 △'재원배분방향'에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 △'시행계획'의 관리과제와 재원배분방향 사업간 정책 연계를 강화
    -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 참고1 안건1-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세부 이행계획

### ※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본보고서는 별도배부

## ①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보호 및 처벌 강화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1-1. 영업비밀 등 보호 강화		
·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,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 상한액 상향	'16.4분기	특허청
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	'16.4분기	특허청
·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	'16.4분기	특허청
· 양형기준 강화	'16.3분기	지재위(법무부)
·증거제출의무 부과 및 불응시 제재효 도입	'16.4분기	특허청
1-2.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회복절차 간소화		
·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	'16.5월	특허청
·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신설	'17.3월	특허청
·특허소송 증거 확대 및 제출의무 강화	'16.9월	특허청
1-3. 재판의 신속성 확보		
·집중심리제 도입	'16.2분기	지재위, 법무부
·법원에 기술전문인력 증원	_	지재위, 법무부
· 가처분사건 처리기한 법정화	-	지재위, 법무부
· 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사건 공공감정 서비스 제공	'16.하반기	특허청
1-4. 소송 前, 신속구제 절차 강화		
· 분쟁조정위원회 통합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방안 마련	'16.하반기	산업부, 중기청, 특허청
·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피신청인 응소 권고조항 신설	'17.상반기	공정위
·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 성실의무 조항신설	'16.하반기	산업부, 중기청, 특허청
·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 도입	'16.하반기	중기청
·특허심판사건 Fast-Track 제도 운영	년중	특허청

# ② 신고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2-1.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		
·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 확대 및 경찰청과 핫라인 신설	'16.상반기	중기청(경찰청)
·기술보호울타리에 신고·제보란 신설 및 경찰청 연결	'16.상반기	중기청(경찰청)
· 통합상담·신고센터에서 신고포상금 적극 안내	'16.상반기	중기청(공정위)
2-2.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및 협조체제 강화		
·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 증강 배치	'17.상반기	경찰청
·특허수사 자문관 채용	'16.상반기	법무부(검찰청)
·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	'16.하반기	법무부(검찰청)
·지식재산보호원 권한 강화	'16.4분기	특허청
2-3. 기술자료 부당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		
· 원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부당 제공 현장조사	'16.상반기	공정위
·기술유용 혐의업체 집중조사	'16.하반기	공정위
· 기술유용 현장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	'16.하반기	공정위 (경찰청, 특허청)

# ③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3-1.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		
·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	'16.하반기	산업부
·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	'16.하반기	산업부
· M&A 신고대상 확대 검토	'16.하반기	산업부
3-2.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· 현지보호 확대		
·해외진출 사전교육	'16.하반기	특허청
·해외 IP-DESK 확대	'16.하반기	특허청
·소송보험 가입 지원	'16.하반기	특허청

# ④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4-1.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		
·보안관제 서비스 확대	'17.하반기	중기청
·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	'16.하반기	미래부
4-2. 핵심기술인력 확보·유지환경 강화		
·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마련·홍보	'16.하반기	특허청
· 경업금지 표준매뉴얼 등 보급	'16.하반기	특허청
·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	'17.상반기	중기청(기재부)
· 인력의 부당 유인·채용 판단요건 완화	17.상반기	공정위
4-3.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		
·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	'16.하반기	특허청 (산업부, 중기청)
·동반성장지수, 공정거래협약 평가 반영	'16.하반기	산업부, 공정위
·비밀유지계약서 표준양식 개발·보급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	'16.하반기 ('17.상반기)	특허청(공정위)
· 공익광고 실시	'16.하반기	특허청 (산업부, 중기청)
4-4.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대비 보험지원 확대		
·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에 소송보험료 지원 확대	'16.하반기	특허청
·소송보험 확산을 통해 보험료 인하	'17.하반기	특허청

### 참고2

# 인건2- 제2차(2017~2021)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<미래부>

(안건담당: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정유진 사무관 02-2110-2176)

#### □ 추진배경

○ 제1차(2012~2016)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,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수립지침 마련을 추진

#### □ 수립지침 마련 기본방향

-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**매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, 주요국의** IP 정책동향, 우리나라 경제환경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실시
- 이를 토대로 제2차(2017~2021) 기본계획의 잠정적인 구조(안)을 설계 ※ [추진경과] 1차 계획 추진실적 및 주요국 IP 정책동향 분석(1~2월) → 제2차
  - 기본계획 구조(안) 설계(3월중순) → 전문위원회 검토(3월말)

### □ 제2차(2017~2021)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구조(안)

- (지식재산 비전 2021) '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'를 목표로『지식재산 富國,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』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
- 5대 분야 정책방향 (※ 분야별 20대 전략목표 「참고」자료 참조)
- (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)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및 개방·융합형 혁신 장려
- (지식재산 품질강화와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) 지식재산 국내외 침해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,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
- (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활용·공유 증진) IP-R&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 및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
- (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)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
- (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) 신품종, 생명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방송포맷 등 한류콘텐츠 보호체계 마련

#### □ 향후계획

- 제2차(2017~2021)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(~'16.4.30)
- 관계기관\*별 **제2차 기본계획**에 담을 **계획 및 시책 제출**(~'16.6.30) \*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, 총 41개 기관
- 제2차 기본계획(안) 마련\* 및 공청회 실시 등(~'16.11)
- **제2차 기본계획(안)** 지재위 안건 상정 및 **확정**(~'16.12)

# <5대 분야 정책방향 및 20대 전략목표>

분 야		정책방향 및 전략목표
1.가치있는	정 책 방향	<ul> <li>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연구 개발 기획과 연계하는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구축</li> <li>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방·융합형 혁신 장려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</li> </ul>
창출체계 고도화		1-1.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 확보 1-2.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효적 R&D 관리 1-3. 콘텐츠·브랜드·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1-4. 개방형·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 환경 조성
2.지식재산 품질강화 및 효율적	정 책 방향	<ul> <li>지식재산의 안정적, 유용한 권리부여를 위한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 및 분쟁해결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</li> <li>지식재산 침해행위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 재산 침해 단속·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추진</li> </ul>
보호체계 구축		2-1. 심사품질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뢰성 확보 2-2.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2-3.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 확대 및 침해대응 강화 2-4. 합리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
3.부가가치 극대화를	정 책 방향	<ul> <li>IP-R&amp;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시키고, 지식재산 공유·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</li> <li>지식재산 평가-금융-거래 전반에 대한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지원 체계 구축</li> </ul>
위한 활 <del>용·</del> 공유 증진	전 략 목표	3-1. 지식재산 부가가치 극대화 3-2. 시장 중신의 IP비즈니스 환경 조성 3-3.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3-4. 지식재산 활용·공유 추진
4.변화에 유 연한 지식	정 책 방향	<ul> <li>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적 인식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, 보호, 활용의 효율적 선순환 체계의 환경 구축</li> <li>지식재산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식 재산 인재육성 및 인력수급 불균형 개선</li> </ul>
재산 기반 조성 	-	4-1.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 4-2.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4-3. 기술진보에 따른 시스템·제도 개선 4-4.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
5.신지식 재산 발굴과 육성	정 책 방향	<ul> <li>신품종, 생명 및 유전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 및 전통 지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,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</li> <li>방송포맷 등 한류 콘텐츠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</li> </ul>
기반 구축	전 략 목표	5-1. 생물·유전자원 및 신품종 대응체계 합리화 5-2. 전통지식의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5-3. 한류 방송콘텐츠 보호체계의 고도화 5-4. 신산업 영역의 지식재산 발굴과 전략수립

#### 참고 3

### 안건3-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<관계부처 합동>

(안건담당: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박신애 사무관 02-2110-2178)

#### □ 추진배경 및 경과

- 「지식재산기본법」제9조에 의거, '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2012~2016)'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  - ⇒ (2016년 수립방향) 기본계획 전략 2단계\*('15~'16)의 마지막 해로서, 고부가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(IP) 전략에 박차를 더함
    - \* (1단계) 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 ⇒ (2단계) 국부(國富)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현
- 「국정과제」및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에 부응하도록 **19개 중앙** 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·체계화

구 분	전략목표	관리과제
1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	64개	215개
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	102개	670개

### □ 주요내용: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

- ① 시장경쟁력을 갖춘 「시장맞춤형 IP 창출」
  - R&D-특허-표준으로 연계되는 표준특허 중심 R&D 과제수행을 지원\*하고, 창조형·개방형 IP 창출환경을 조성\*\*하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
    - \* [R&D 수행단계 지원] ('16) 15건, [R&D 후속단계 지원] ('15) 100건 → ('16) 100건
    - \*\* X연구, 전략연구 등 창의적·도전적 연구 지원 및 우수연구 후속 지원 등을 강화
- ② SW·콘텐츠 중심 산업 강화을 위한 「SW·콘텐츠의 전략적 확보」
  - SW기초기술\*, 융복합·디지털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 SW 분야 유망 중소기업 대상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확대 \* 운영체제(OS), 기계학습, 지능형 SW,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(DBMS) 등
- ③ IP·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선순환되는 「IP 활용체계 고도화」
  -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, 신성장 동력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,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\*,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육성\*\*
    - \* 중소기업 보유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권리 확보, 용도별 맞춤형 평가 지원
    - \*\* 비즈니스센터 운영, IR 및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VC, 엔젤투자자, MD 등 전문가와 1인 창조기업 간 만남의 장 제공

- ④ 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「대학·공공연·중소기업 IP 역량 제고」
  - 대학·공공(연) 보유기술 제품화를 위한 IP투자 비즈니스 모델 구축,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, 플랫폼기술특허 등의 권리분석을 통해 시장 개척, 신제품 개발 등 전략적 활용을 지원\*
    - \* 지원분야: 의약품(물질/용도/제제), 3D 프린팅, 착용형 스마트 기기 기술 분야
- ⑤ 미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「신지식재산 육성・활용 촉진」
  - 바이오신약, 바이오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고, 차세대ICT 융합 핵심·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망 신지식재산 제도 정비\* \*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안 마련, 非전형상표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개정
- ⑥ 권리구제 및 보호집행력 확보를 위한 '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」
  -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및 정당한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, 해외저작권센터 및 IP-DESK 설치 확대 등 현지 지원체계 강화
- ⑦ 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「IP 전문인력 육성」
  - IP 기초교육 강화\*, 발명인재 양성\*\* 등을 통해 IP 분야별 창출·관리 인력을 육성하고, 자격 및 채용 연계되는 인력양성 방안을 개발·보급 \* 초·중·고교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육내용 반영 및 초·중등교원 대상 교육 \*\* 학생발명 전시회 및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개최,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(YIP) 등
- ⑧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「IP 존중문화 확산」
  - 저작권상생협의체 활동 및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 상생적 IP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,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도 제고

### □ 재정투자 계획

-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**총 4조 6,436억원 규모의 예산**을 투입
- (관계 중앙행정기관) '15년 대비 6,171억원 증가한 3조 4,656억원
- (광역지방자치단체) '15년 대비 1,084억원이 증가한 1조 1,780억 원

### □ 향후 계획

- '16.4월, **시행계획** 지재위 **확정** 및 관계기관 **통보**
- '17년 상반기, '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추진실적 점검·평가

### 안건 4

###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 <지재위>

(안건담당: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승기 사무관 02-2110-2185)

#### □ 추진배경

- 기술·환경 변화에 따른 **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해 전문위를 활용, **정책이슈를 발굴** □ 2016년도 이슈 10개 최종 선정 \* 2014년 시범 실시 후 2015년부터 정례화
- **관계부처에 정책화를 권고**('15.12월)하고 부처 **추진계획을 접수**('16.1~2월)

#### □ 관계부처 정책화 추진계획

- ① 저작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선 (문체부)
- ⇨ 현행 '디지털저작권거래소'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재위 보고('16.10)
- ②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(농식품부 등)

  □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단계적 DB화(농식품부), 의방유취 등
  전통지식 기반 한의학 콘텐츠 개발(복지부) 등
- ④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(특허청)
  - 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'16.1분기), 개선안 확정('16.3분기), 관련법령 개정 추진('16.4분기)
- ⑤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 (복지부 등)
  - □ 범부처 통합 기술사업화 추진방안 마련('16.12, 복지부), 창업 초기 바이오기업 지원 전문펀드 조성('16.12, 산업부) 등
- ⑥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등 (기재부 등)
  - □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대상에 저작권 추가(기재부), '특허출원·등록 비용과 특허조시분석 비용 세액공제' 및 '기술이전·취득 법인세 감면' 건의(16.4월, 특허청)
- ⑦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(특허청)
  - ⇒ 투여 용량 및 용법도 특허화하는 특허 심사기준 개정('16.12)
- ⑧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-NCS 확산 (특허청)
  - ⇒ 고등학교 수준의 IP-NCS 기반 교육모듈 개발('16.4) 및 시범적용('16.7)
- ⑨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&D 성과관리 (미래부)
  - ⇒ 국가R&D 성과지표를 점검하여 제5차 표준 성과지표 개정시 반영 검토
- ⑩ 전통문화(표현물)의 법적 보호 (문화재청)
  - ⇒ 지식재산권 확보 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실시('17년)
- □ **향후계획** : 관계부처의 정책화 추진실적 본회의 보고('16.12)

### 참고 5

### 안건5-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<지재위>

(안건담당 :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승기 사무관 02-2110-2185)

#### □ 추진배경

○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

### □ 현행 추진체계 및 문제점

- '중점투자방향'(4월)과 '재원배분방향'(7월)의 이원적 체계로,
- 재원배분방향의 수립시기가 늦어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전에 '재원 배분방향' 반영 미흡
- '시행계획' '성과평가' '재원배분방향'간의 연계 및 사업성과 평가의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연계 강화 필요
- '시행계획'과 '재원배분방향'간 대상사업 기준 상이 및 각각 대상 세부사업이 불일치하여,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

### □ 개편방안

- '재원배분방향'에 '중점투자방향'을 통합, '재원배분방향'을 조기 수립(6월 이전)
- '재원배분방향' 수립 시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화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
- '시행계획'의 관리과제가 포함된 사업을 재원배분방향의 대상
   사업으로 일치시켜, 정책 연계를 강화

#### □ 향후 계획

○ '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'을 '16년 6월 본회의 의결 후 예산당국 송부 및 예산반영 협의 추진